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조 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10만명에 달하는 의용소방대원은 2019년 국가재난 으로 선포된 강원도 산불진화의 숨은 영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활동대비 열악한 처우로 수당현실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이 신설되면서,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위험한 환경에 자주 노출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 소방보조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극적 재해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를 통해 의용소방 대원들이 재해 발생시 용이하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 는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